

고 소 장

고 소 인

1. 강새봄
2. 김문정
3. 김재하
4. 박석운
5. 양경수
6. 양옥희
7. 윤복남
8. 이나영
9. 이호림
10. 이홍정
11. 진영종
12. 김은정
13. 안지중
14. 신지연
15. 조광남
16. 김남주
17. 정용준
18. 주제준

피고소인

1.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2. 종로경찰서장
3.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4. 현장 출동 기동대장 및 기동대원

고 소 취 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체포, 감금)죄,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집회방해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죄로 고소하오니 이를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서론

고소인들은 2025. 3. 26. 오전 00:00부터 신고된 집회장소에서 농성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의 공모로 경찰이 집회물품인 트랙터 1대를 견인한다는 명목으로 집회 현장에 난입하였고, 저항하는 고소인 14 내지 18에 폭행을 행사하는 등 무력으로 진압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이 현장에 있던 집회물품인 트랙터 1대를 견인하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폭행 그밖의 방법을 자행하여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현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공권력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공권력 행사의 방법과 범위가 과도하며,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범죄입니다. 이하 자세히 설명합니다.

2. 당사자들의 지위

가. 고소인들의 지위

고소인 1 내지 12는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대표단으로 2025. 3. 26. 00:00부터 23:59까지 신고된 집회의 주최자이며, 고소인 13은 집회를 신고한 신고인입니다.

고소인 14 내지 18은 2025. 3. 26. 00:00부터 09:50 사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가하여
피고소인 1과 2의 지시를 받은 피고소인 3과 4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나. 피고소인들의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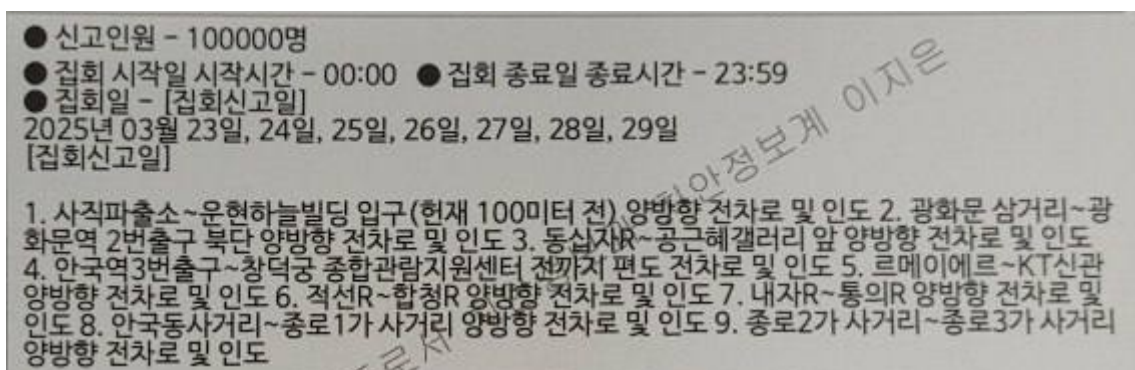
피고소인 1 박현수는 공무원으로 서울경찰총장 직무대리이고, 피고소인 2는 공무원으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며, 피고소인 3과 4는 피고소인 1과 2의 지시를 받고 집회 현장에서
고소인들을 폭행 및 체포, 감금하였으며, 집회 물품인 트랙터 1대를 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한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들입니다.

3. 이 사건 기초사실

가. 고소인들은 2025. 3. 23.부터 2025. 3. 29.까지 아래와 같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집회신고를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퇴진집회 및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고소인들은 2025. 3.
26. 신고된 내용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의 상징인 ‘트랙터 1대’를 집회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회신고 장소인 “1. 사직파출소~ 운현하늘빌딩 입구” 중
광화문역 담장 인근 농성장(이하 “집회장소”라고 합니다)에 비치하였습니다.

[증 제1호증 집회 신고서]

[증 제2호증 2025. 3. 26. 오전 트랙터 사진]



나.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2025. 3. 26. 00:30경부터 9:50 사이 ‘트랙터 1대’를 신고한 집회
장소에 비치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견인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집회장소에 난입하여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집회 물품인 트랙터 1대를

견인하는 방식으로 탈취하여 집회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고,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고소인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일부 고소인을 체포하고 감금하였습니다.

[증 제3호증 경찰 집회장소 난입 사진 및 영상]

4.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 관련 규정

형법 제123조(타인의 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피고소인들 범죄사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소인들은 2025. 3. 26. 트랙터 1대를 견인하고 집회 참가자를 폭행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소인들에게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였고, 그것이 공권력 행사의 근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고소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허용된 집회물품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피고소인들은 집회현장에서 트랙터 1대가 허용된 집회물품이 아니므로 이를 견인하는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범죄행이 하루 전인 2025. 3. 25.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 및 2,000명이 남태령에서 광화문까지 15km 행진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트랙터는 서울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제한통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서 법원이 “신청인이 신청한 물품 중 트랙터의 이용은 금지하고, 1톤 트럭 20대만 이용할 수 있다”고 일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증 제4호증 집행정지결정서]

서울행정법원 결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제한통고가 인정된 부분은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이지, 트랙터의 서울 출입, 반입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남태령에서 트랙터 행진을 막은 것이 법원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트랙터 행진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농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트랙터를, 그것도 단 1대, 광화문에 별도 경로로 반입한 것을 두고 그 자체가 허용된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강제로 반출할 법적 근거는 더더욱 없습니다. 즉, 트랙터를 허용된 집회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이를 단순히 판단한 것을 넘어 현장에서 이를 탈취하기 위하여 집회장소에 난입하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을 무력으로 제압하며 폭행한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백보 천보 만보 양보하여, 트랙터 1대가 허용된 집회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이에 대한 철거 내지 견인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하였다면,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않고 도로를 점용,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로관리청’이 주체가 되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해당 트랙터 1대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일 한차례 비치되어 있었을 뿐이고,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찰’이 해당 집행을 무력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어느모로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권력 행사이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을 무력으로 제압한 것은 권한을 남용하여 집회결사에 관한 권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 위반이라는 주장 관련]

피고소인들은 트랙터가 정해진 장소에 주차된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견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인도에 차량이 주차되더라도 동법 제35조에 따라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관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1항). 설령 주차위반으로 판단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을 먼저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을 하도록 하고, 현장에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부재할 경우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 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그런데 당시 문제가 된 트랙터 1대는 2025. 3. 26. 오전에 ‘집회 물품’으로 사용할 목적에서 해당 장소에 ‘비치’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교통 안전이 저해되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권한 행사가 필요한 경우도 아닙니다. 오히려 피고소인들이 집회 장소에서 이를 견인하여 인근 도로로 트랙터 1대를 주차시키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주변을 병력으로 감싸면서 오히려 도로 소통을 방해하였으므로 공권력 행사가 결코 ‘필요한 범위’에서 행사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투쟁에 대한 서울시장과 총리의 한마디 발언과 지시에 응하기 위하여 평화집회를 하는 시민을 상대로 무리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증 제5호증 도로에 트랙터 1대를 주차시키고 경찰이 이를 막는 사진]

특히, 해당 트랙터 1대는 집회 물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당시 상황을 고찰하였어야 합니다. 나아가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라도 공정하게 예외없이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오로지 고소인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만 기동대를 동원하여 무리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반대 성향의 보수집회에서 일어난 ‘주차 위반’은 눈감으며 선별적인 공권력 행사를 보여주는바 이러한 간접사실에 비추어 피고소인들이 직권을 선별적으로 행사하여 피고소인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증 제6호증 보수단체 주차위반 행위 관련 SNS에 업로드 된 사진]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2025. 3. 26. 오전 00:30부터 09:50사이 광화문 인근에서 고소인들이 신고한 집회장소에서 경찰 공무원의 지위에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1) 현장에

집회물품인 트랙터 1대를 무력으로 견인하고, 2) 당시 이에 저항하는 집회참가자인 고소인 14 내지 18을 폭행하였으며, 3) 집회장소에 난입하여 집회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없는 공권력을 행사하여 고소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집회참가자들이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갖는 집회결사의 자유 등 집회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나. 직권남용(체포,감금)죄

1) 관련 규정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소인들은 2025. 3. 26. 05:30경 고소인 17 정용준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고소인 17 정용준은 집회에 참여하고, 집회장소에서 당직하고 있는 관리자로서 피고소인들의 트랙터 불법견인에 정당한 항의를 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피고소인들이 인근에 있던 사람들을 폭행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인 17 정용준이 항의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합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촉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인 17 정용준은 통상적인 항의를 한 자로 현행범 체포에 요구되는 요건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로 현행법 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고소인 17 정용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에게는 직권남용 (체포,감금)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피고소인들은 고소인16 김남주도 사실상 체포 및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후술하듯이 피고소인들은 2025. 3. 26. 05:00경 고소인16 김남주가 트랙터 불법견인에 대해 변호사로서 항의하자 경북궁 담벼락에 고소인16 김남주를 밀어넣고 양 팔을 각각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가 팔을 비틀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들은 고소인16 김남주를 땅에 눕히고 약 30분간 이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즉 피고소인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실상 고소인16 김남주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체포, 감금하였고, 따라서 피고소인들에게는 직권남용(체포,감금)죄가 성립합니다.

다. 독직폭행죄

1) 관련 규정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소인들은 2025. 3. 26. 오전 05: 00경 집회현장에서 평화롭게 농성을 하고 있던 고소인 14 신지연, 15 조광남, 16 김남주, 17 정용준, 18 주제준 이 농성장에 비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법적 근거가 없고 그 방법이 위법함을 지적하자, 위 고소인들의 신체를 제압하여 땅에 방법으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고소인 14 신지연, 15 조광남에 대해서는 사지를 들어 던지는 폭행 또는 가혹행위가 있었고, 고소인 14 신지연과 15 조광남은 모두 우측 손에 염좌, 목과 허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고소인 16 김남주, 17

정용준도 손에 상처가 나고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고소인 18 주제준은 피고소인들의 폭행행위로 바닥에 쓰러져 방치되었고, 어지러움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소인들의 유형력 행사는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밖에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것으로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공무집행의 경우에도 공권력을 행사하는 방법과 절차가 적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당시 농성장에서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있었던 고소인을 다수의 경찰이 무력으로 제지하는 방식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였고 그 방식이 폭행이었으므로 독직폭행죄가 성립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개별 피고소인들의 피해 관련 증거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 집회시위방해죄

1) 관련 규정 및 판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신고 후 개최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취지 및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제도의 취지뿐만 아니라,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제4조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제14조 및 제15조로 집회 또는 시위에 주최자 내지 주최자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된 질서유지인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 아울러 제16조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로 하여금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집회 또는 시위와 그 주최자는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문제가 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관하여 당초 주최자가 신고한 앞서 본 여러 가지 사항 등과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소인들 범죄사실

고소인 1 내지 12가 대표로 있는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기존에도 같은 장소와 유사한 내용으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2025. 3. 26. 06:00경부터 내자R- 통의R 방향에서 진행된 집회는 기존에 신고된 집회의 주최자, 장소,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시민들은 2025. 3. 26. 5:30경부터 경찰이 광화문 서십자각터 농성장을 침탈하여 트랙터 무단견인을 시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였으며,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행진을 지지하고 경찰의 행태를 규탄하고자 한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집회는 고소인 1 내지 12가 대표로 있는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주최로 신고된 기존 집회신고와 사실상 내용이 동일하였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집회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물리력, 폭력행사가 없는 평화집회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5. 3. 26. 00:00경부터 09:59까지 통의R방향에서 진행된 집회는 사전에 신고된 집회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집회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명백히 사전에 신고된 집회와 동일한 집회를 막무가내로 물리력을 행사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폭행하고, 트랙터 1대를 법적인 근거없이 견인함으로써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동원된 경찰이 폭행을 행사하고 무리하게 트랙터를 견인하기 위하여 집회장소에 난입함으로써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집회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중재노력까지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집회의 평화적 진행을 방해하여 집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1) 관련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12조 (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집회 물품인 트랙터 1대를 견인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여 집회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트랙터 1대를 집회 시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보았더라도 이는 도로법 제74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합법적 절차에 의해 반출할 수 있을 뿐입니다. 특히 경찰이 직권으로 조치하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즉시강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고 있다고 인정될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거듭 설명하는 것과 같이, 당시 집회 현장은 매우 평화적으로 농성을 이어가는 등 집회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하여 참가자를 폭행하는 등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친 것’은 경찰입니다. 제6조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자신들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적법한 근거없이 공권력을 행사하고 직권조치를 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를 위반한 행위로 엄히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하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합니다.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에 해당하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5. 결론 및 수사요청사항

법치주의에 핵심은 ‘공권력에 대한 통제’입니다.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한 행위는 수사기관이 법령에 맞게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공정하고 선별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시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입니다. 부디 피고소인들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서류

1. 증 제1호증 집회 신고서

- 1. 증 제2호증 2025. 3. 26. 오전 트랙터 사진
- 1. 증 제3호증 경찰 집회장소 난입 사진 및 영상
- 1. 증 제4호증 집행정지결정서
- 1. 증 제5호증 도로에 트랙터 1대를 주차시키고 경찰이 이를 막는 사진
- 1. 증 제6호증 보수단체 주차위반 행위 관련 SNS에 업로드 된 사진

제 출 서 류

- | | |
|-----------------|------|
| 1. 위 증거서류 | 각 1부 |
| 1. 공동 대리인 선임신고서 | 1부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